

지방회계법 제정의 당위성과 과제

한국정부회계학회
정성호(강원대) 강인재(재정공학연구소)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의 의의와 과제

- 2007년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 재정관리에 새로운 전기 마련
 - 사업별 원가정보 산출, 비용관리, 사업 관리의 효율성 제고
- 재무회계정보는 물론 사업예산과 성과평가, 결산정보간의 핵심 연계고리인 원가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회계관련법, 제도의 정비와 체계화 요구
- 재정부경의 변화에 따라 원가회계 및 사업예산의 고도화(성과관리 연동), 부채관리 및 재정통계 관리, 재정위기 조기경보와 재정관리, 보조금 관리의 개선, 재정집행 내부통제 및 재정규율, 정부 3.0과 재정투명성, 분식회계와 실시간 관리 등 회계의 역할이 더욱 중요
- 예산과 회계의 상이한 성격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신뢰성있는 회계정보 산출과 활용을 위한 독자적 회계법제정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된 이후 회계관련 조직 및 인원 축소; 과거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지방분권촉진법」 제12조 2항의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 노력”에 관한 규정이 2013년에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특별법」으로 통합되면서 삭제됨.
- 중앙정부의 경우 「국가회계법」제정;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등 토대구축과 이에 따른 조직 개편

지방회계법 제정의 당위성

➤ 예산과 회계의 성격차이

	예 산	회 계
의 의	미래의 계획	실적: 과거의 기록
가치관련성	가치배분	가치 중립성
성 격	정치성과 전문성의 혼재	전문성
목 적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제공
분석기법	조정, 추정	회계기준의 적용

➤ 정부회계의 중요성인식 부족: 회계관련 조직 축소

➤ 법 기술적(記述的) 문제: 환경변화에 대응제한

지방회계제도의 운영현황

➤ 조직

(1) 안전행정부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회계결산담당은 사무관(1)과 주무관(1)

(2) 지방회계기준위원회

전 지방자치단체에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2007년) 이후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임기만료(2007년 8월) 이후 2년 동안 위원회 재설치 되지 않음.

2009년 11월 재무회계 선진화 소위원회가 발족되었으나 국가회계법에 의한 법정기구인 중앙정부의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비교가 안됨. 아울러 이를 보좌할 지방회계전문기관이 없음.

(3)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 2012년 대구광역시 복식부기팀 마저 없어짐; 현재 계(係)수준의 복식부기회계 업무처리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경기도 복식부기팀이 없어졌다가 2012년 3월 재조직되어 현재 4명이 업무수행)

- 17개 자치단체중 경기도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 조직 축소; 4개 자치단체는 현상 유지; 회계업무가 회계과에 속한 곳(9), 회계계약심사과(2), 새마을회계과(1), 회계재산담당관실(1), 재무과(1), 총무과(1).

시군: 복식부기회계가 도입 후 한시적으로 운영된 복식부기팀 해체; 대부분의 자치단체 1명이 복식부기업무 담당; 회계업무의 특성상 타부서로의 전직 많음

- 전문성 저해: 회계지식을 가진 공무원 부족과 순환보직으로 장기근무의 제약 등
- 이호조와의 연계 부족
- 지방공기업, 출자·출여기관과의 통일된 회계기준 미비; 따라서 지방회계법에 이들 기관을 포함하여 우선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 필요
- 자치단체장 등 정책결정자의 활용 제한;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회계책임관의 책임성을 확보 장치 마련필요

국가회계법 적용 예

국 가		지 방
국가회계법 (‘07.10월 제정 → ‘08.1월 전면 개정)	☐ 국가회계 사무의 관장	☐ 별도 없음
	☐ 회계책임관 지정	☐ 별도 없음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 별도 없음
	☐ 다른 법률 우선 적용 원칙	☐ 별도 없음
	☐ 회계처리원칙(발생·복식부기)	☐ 지방재정법 §53①*
	☐ 회계기준업무의 위탁	☐ 별도 없음
	☐ 결산보고서 작성주체	☐ 지방재정법 §53①
	☐ 결산보고서 구성(개요, 세입·세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 지방재정법시행령 §62①**, 지자체 회계기준 규칙
	☐ 결산보고서 부속서류 명세	☐ 지자체 회계기준 규칙
국가재정법 (‘07. 1월 제정 → ‘08.1월개정)	☐ 회계장부 비치, 감독, 교육 등	☐ 별도 없음
	☐ 결산보고서 제출 절차 등 ※ 결산보고서 작성관련 사항은 국가회계법으로 이관(‘08년)*	☐ 지방자치법 §134 및 동법 시행령 §82 ~ 84

주: ‘07년 국가회계법 제정 당시부터 결산(세입·세출, 재무, 기금) 법령이 분산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09.1월부터 회계·결산의 내용은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절차는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하는 현행 법령체계 확립됨(정부안으로 추진)

중앙회계제도 운영현황 등

- **조직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79명):** 7개 과와 2개 팀으로 구성
 - 성과관리심의회(2명), - 재정관리총괄과(15명), -(재정집행관리팀)(8명), - 재정제도과(8명), - 성과관리과(9명), - 타당성심사과 (7명), - 민간투자정책과 (10명), - 재정정보과(8명)
회계결산과 (7명): 과장, 사무관(3), 주무관(3); 회계결산, 성인지결산, 결산관련 법령검토, 회계결산업무, 결산업무
(재무회계팀) (5명): 팀장, 사무관(3), 주무관(1); 국가회계제도, 국가회계법, 국가회계센터 관리·업무, 재무결산

➤ 국가와 지방의 정책지원조직 비교

구분	국 가	지 방	
		현행	개선
정책 부서	기재부 회계결산과(7명) 및 재무회계팀(5명) 등 총 12명	안행부 재정관리과 회계결산담당 2명	회계결산 전담 과 또는 팀으로 설치(2명→7명)
지원 기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조세재정연) 2부(평가·기준/재무통계) 1팀 23명	별도 조직 없음	지방세연구원 지방 회계재정통계센터 3 팀 10명

➤ 지방세법 등 기타법률 분법

지방회계법의 당위성 및 제정방향

- 단일법 규정; 회계법령 체계의 일관성 확보 필요. 다만 지방회계·결산내용 (지방회계법); 절차(지방재정법에 규정)
- 기존 지방재정법의 회계관련규정(예, 지방회계사무관장, 지방회계기준, 결산보고서, 회계공무원교육 등)은 새로 제정될 지방회계법에 포함

구분	내용	대안
예산과 회계의 성격차이	예산: 정치적, 회계: 가치중립적	지방회계법 분법: 책임성강화 조직확충 및 인력전문성제고
정부회계의 중요성인식	회계중요성의 인식미흡으로 조직축소	
법 기술적문제	급변하는 회계환경에 대응제한	
구분	내용	
회계제도연계	자치단체 회계제도의 연계(공기업, 출자출연기관 포함)	
조직확충	재정관리과 조직확충, 지방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지방회계 재정통계센터 설립, 지자체 회계담당부서 확충	
인력의 전문성제고	회계책임관의 신설: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관련 규정의 명시화: 국가회계법과 차별화 회계담당공무원의 자격증 취득과 CPA 특별채용	
재무보고서 신뢰성제고	재무보고서 작성주체인 자치단체장과 회계책임관의 법적책임성 규정: 재무보고서의 내용 오류 및 재정공시에 관한 제반사항, 결산감사의 제도화	
회계정보의 활용	회계정보 활용에 대한 평가 및 인센티브 적용: 재정분석과 유사한 평가시스템 도입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수입, 지출, 자산, 부채를 포함하는 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자치단체 Cost Center와 사업관리시 스템의 연계, 보조금(시도비 보조금, 민간보조금 포함)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